

위험성평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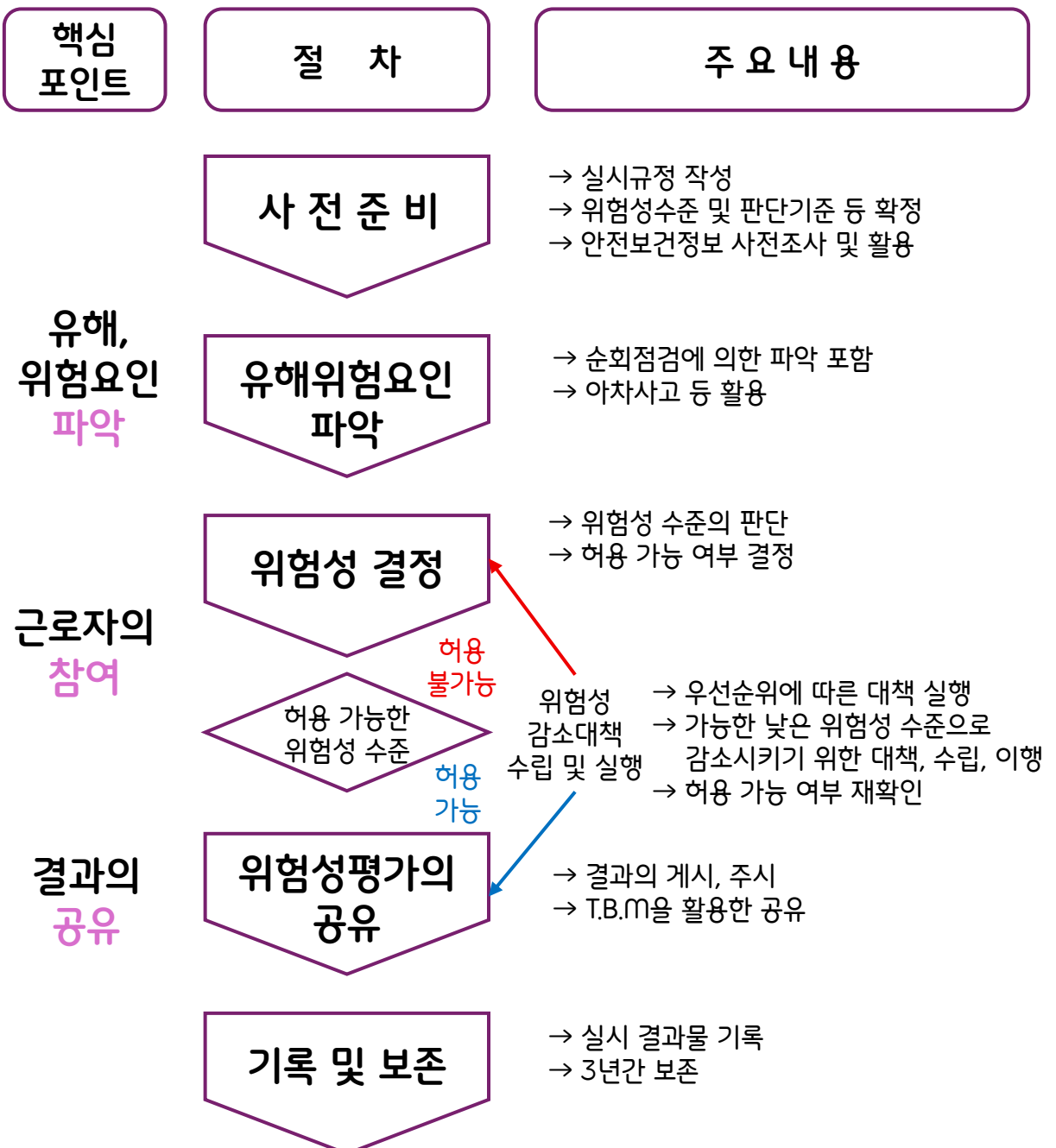
위험성평가란?

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·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·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 방법, 절차, 시기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, 위험성평가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운영 및 지원사업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(위험성평가의 실시)

사업주는 기계·기구·설비, 원재료, 가스, 증기, 분진,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·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,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,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.
사업주는 이에 따른 평가 시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 시켜야 한다.

위험성평가 절차



“유해·위험요인 파악을 제대로 하기 위해 근로자가 참여하고,
그 해결방안을 현장에서 작동시키기 위해 모두가 공유한다.”

유해, 위험요인 파악 시 유의사항

- ① 예상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대상자 및 내용을 명확하게 예측해야 합니다.
- ② 최악의 상황에서 가장 큰 부상 또는 질병의 중대성을 추정합니다.
- ③ 부상 또는 질병의 중대성은 부상이나 질병 등의 종류에 관계없이 공통의 척도를 사용합니다.
- ④ 유해성이 입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일정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를 기초로 하여 유해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해야 합니다.
- ⑤ 임시·수시작업의 경우 근로자들이 익숙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고를 당하기 쉽기 때문에 이 또한, 위험성평가에 포함하여야 합니다.

감소대책 수립 시 유의사항

- ① 위험작업을 아예 폐지하거나, 기계·기구, 물질의 변경 또는 대체를 통해 위험을 본질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을 우선 고려합니다.
- ② 제거가 어렵다면, 인턱록, 안전장치, 방호문,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유해·위험요인의 위험성이나 접근 가능성을 줄입니다.
- ③ 그 외 작업매뉴얼 정비, 출입금지·작업허가 제도 등 관리적 방법을 고려합니다.
- ④ 개인보호구의 사용은 최종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.
- ⑤ 감소대책 수립 후 실시 담당자를 지정하고 언제까지 실시가 완료되었는지를 점검합니다.

위험성평가 실시시기

- ① 최초평가: 사업장 성립 후, 사업자 가동, 공사의 진행 등 1개월 내 착수함을 기준으로 하되, 평가의 실효성이 확보되는 시기에 적절하게 시행
- ② 정기평가: 매년 위험성평가 결과의 재작성 재검토
- ③ 수시평가: 설비·물질 신규 도입 또는 산업재해 발생 시
- ④ 상시평가 (정기+수시 평가를 곁음하는 새로운 평가)
 - 매월 1회 이상 근로자 제안제도 활용, 아차사고 확인, 사업장 순회점검 등을 통해 사업장 내 유해·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위험성결정 및 감소대책 수립·실행
 - 매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, 안전관리자, 보건관리자, 관리감독자 등을 중심으로 위험성평가 결과 등을 논의·공유하고 이행상황을 점검
 - 매일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를 통해 공정·작업별 핵심 유해·위험요인에 대한 주의·준수사항 공유/전파